

선원 최저임금 산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

권유민* · 황태웅** · 양영훈** · 손철** · 김득봉***

*, ** 목포해양대학교

A Study on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Minimum wage

Yu-min Kwon* · Tae-wong Hwang** · Young-hoon Yang** · Chul Son** · Deug-bong Kim***

*, **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, Mokpo, 58628, Korea

핵심용어 : 최저임금, 선원법, 근로시간, 통상임금

Key Words : Minimum wage, Seafarers act, Work hour, Regular wage


I. 연구 배경 및 목적

배경

- 선원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육상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방식으로 책정이 되고 있음.
- 선원의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 기준은 선원의 해상노동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함.

목적


- 선박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선원 최저임금 산정 방법의 제시



III. 현황

	최저임금법	선원법
법률	<제3조> 적용범위 선원과 선박소유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음	<제62조> 시간외 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의 150/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지급
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육상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선원 최저임금 고시 · '17년 선원 최저임금은 '16 선원 최저임금 대비 약 7.3% 인상. - 월 1,760,800원 책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포괄임금제의 방식 · 실제 발생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지급이 아닌, 일률적으로 휴일근로와 함께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.


*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간외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산정



II. 관련 법률

선원법


- ✓ 임금
 -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
- ✓ 통상임금
 - 선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
- ✓ 시간외근로수당
 -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




III. 현황

· 업종별 통상임금 비교

업종	내항선	외항선	해외취업상선
임금 (만원)	199.3	267.6	361.9



국내 임금
↓ 1.4배
해외 임금



* First Author : ymk@mmu.ac.kr, 061-240-7816

† Corresponding Author : kdb@mmu.ac.kr, 061-240-7197